##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동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0364

발의연월일: 2023. 2. 28.

발 의 자:이동주·김용민·서동용

민병덕 • 우원식 • 박상혁

허종식 • 신현영 • 위성곤

조오섭 • 윤영덕 • 아수진비

김정호 · 남인순 · 김원이

유정주 • 허 영 • 이학영

강민정 · 서영교 · 김남국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책무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사이며 세계 문명사에서조차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참사 발생 직후 정부는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참사의 모든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국민 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추모의 대열에는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태워 재난지역 상인은 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참사 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이러한 정서적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폐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고 있었으며 상권은 초토화되었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시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2022년 태풍 헌남노 침수피해 당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용산 이태원 특별재난지역 상인에게는 대출 등 금융지원 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또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안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34조의5제9항 및 제66조제3항).

법률 제 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상하여야 하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제6호의2 및"을 "제6호의2, 제6호의3 및"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제34조의5제9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그 절차에 관한 연구

제66조제3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및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의 영업이익 손실 또는 임대료 등 고정비 지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3 항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또는 소상 공인으로서 2022년 10월 29일 이후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 로 선포된 지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생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현행
략)	과 같음)
<u>&lt;신 설&gt;</u>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하여 희생한 국민의 재산상
	의 피해에 대하여 적절하게 보
	상하여야 하며, 재난이나 그 밖
	의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
	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u>②</u> · <u>③</u> (생 략)	$\underline{3} \cdot \underline{4}$ (현행 제2항 및 제3항
	과 같음)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재	제9조(중앙안전관리위원회) ① -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	
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6의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6의2.(생 략)7. ~ 9. (생 략)② ~ ⑨ (생 략)

-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중앙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 위원회에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9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제6호, <u>제6호의2 및</u> 제7호의
     사항에 대한 사전 조정
  - 2. ~ 5. (생략) ② ~ ⑦ (생략)
-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지역별 재 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 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 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소속으로 시·도 안 전관리위원회(이하 "시·도위

지급 등의 재성석 지원에 관
한 사항
<u>6의3.</u> (현행 제6호의2와 같음)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전정책조정위원회) ①
1
<u>제</u> 6호의2, 제 <u>6</u>
호의3 및
2. ~ 5.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역위원회) ①

원회"라 한다)를 두고, 시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 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시·군 ·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시 ·군·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 략) <u><신 설></u>

5. • 6. (생략)

② ~ ⑤ (생 략)

-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저 뉴얼 작성·운용) ① ~ ⑧ (생 략)
  - ⑨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관리에 필요한 매뉴 얼 표준안을 연구·개발하여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
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적 지원에 관
<u>한 사항</u>
5.・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세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
뉴얼 작성·운용) ① ~ ⑧ (현
행과 같음)
9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 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략)

⑩ (생략)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생 략)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 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 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 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 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 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재난 피해에 대한 보상금
또는 보조금 지급 등 재정적
지원 방안과 그 절차에 관한
연구
5. (현행과 같음)
⑪ (현행과 같음)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
조 등의 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 7. (생 략) <신 설>

8. · 9. (생략) ④ ~ ⑦ (생략) \_\_\_\_\_\_

1. ~ 7. (현행과 같음)
7의2.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 및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의 영업이익 손실 또는 임대료등 고정비 지원

④ ~ ⑦ (현행과 같음)

8. • 9. (현행과 같음)